



공지사항

공고 및 고시

한국전기공업진흥회 공고 제 1997-1호

통상산업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통상산업부 공고 제 1996-157호 '96. 12. 28)에 의거 한국전기공업진흥회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97년 1월 7일
한국전기공업진흥회장

한국전기공업진흥회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1. 추천품목 및 한계 수량

HS. NO	품 명	규 격	한계 수량	기본세율
2812	비금속의 할로젠화물과 산화할로젠화물(일명 SF6가 스라함)	설과 헥사플로라이드(Sulfur Hexafluoride)에 한한다.	258메트릭톤	4%

2. 추천대상기간

1997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함

의 자와 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3. 신청자격

- 가. 당해물품의 실수요자 또는 실수요자 단체
- 나. 당해물품의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 다. 대외무역법상의 무역업자로서 상기 가, 나호

4. 신청구비 서류

- 가. 관세할당추천 신청서 1통
- 나. 수입허가서 사본 1통
- 다. 선하증권 사본 1통
- 라. 수입대행 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통(수입대

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다. 기타 추천에 필요한 서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1불당(USD 1) 1원을 진
홍회에 납부하여야 함.

5. 추천기관

한국전기공업진흥회(전화: 3476-0271/4)

6. 추천수수료

7. 기 타

동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산업부
공고 제 1996-157(1996. 12. 28)호에 의한다.

◎ 통상산업부 고시 제 1997-1호

외화증권발행과 상업차관도입을위한국산시설재및첨단기술산업용시설재확인요령

외화증권발행과 상업차관도입을 위한 국산시설재 및 첨단기술산업용 시설재 확인요령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1997년 1월 7일

통상산업부장관

제 1 조 (정의)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의는 다음과 같다.

① 시설재라 함은 『사회간접자본확충및국산
시설재구입용외화증권발행통첩』(재정경제원
고시 제 1996-28호, 이하 “외화증권발행통
첩”이라 한다) 제1조제6호와 『상업차관도입
인가지침』 제2조제9호에 따라 해당기업이 자
신의 생산활동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
는 기계, 장치 및 기타 설비(부분품 및 사무
용기 제외)를 말한다.

② 국산시설재라 함은 『외화증권발행통첩』 제
1조제7호와 『상업차관도입인가지침』 제2조제
10호에 따라 제1항의 시설재중 국산부품의 사
용비율이 가액기준으로 50%를 넘는 것으로
국내기업이 생산·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③ 첨단기술산업용 시설재라 함은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통상산업부고시 제 1996-
389호)에 소요되는 시설재를 말한다.

제 2 조 (확인서 발급대상자) 이 고시에 의한
확인서 발급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① 외화증권발행통첩 제4조에 따라 국산시설
재를 50% 이상 구입하기 위해 외화증권 발행
계획을 신청하는 자.

② 『상업차관도입인가지침』(재정경제원고시
제 1996-29호) 제10조 내지 제14조에 따라
국산시설재를 50% 이상 구입하기 위해 차관
도입계획을 신청하는 자.

③ 『해외증권발행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국
산대체불가 시설재 및 첨단기술산업용 시설재를
도입하기 위해 해외증권발행계획을 신청하는 자.

④ 『상업차관도입인가지침』 제5조 내지 제9조에 따라 첨단기술산업용 시설재를 도입하기 위해 차관도입계획을 신청하는 일반대기업.

제 3 조 (확인기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산 시설재 여부, 국산시설재 사용비율, 국산대체불가 시설재 및 첨단기술산업용 시설재에 대한 확인기관은 한국기계공업진흥회로 한다.

제 4 조 (확인기준) ①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국산시설재 '여부 확인은 시설재를 구성하는 주요품목별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국산시설재 사용비율은 해당기업이 연간 단위사업별(표준산업분류 5단위를 초과할 수 없다)로 투자하는 시설재총액중 국산시설재 사용비율을 산정하여 확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가액기준으로 국산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구입가액으로 하며, 외국산은 FOB가액으로 한다.

④ 제2조제3항의 국산대체불가 여부는 당해 시설재가 국산불가하거나 국산가능하더라도

경제성, 성능면에서 국산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임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⑤ 제2조제4항의 첨단기술산업용 시설재의 확인은 국산대체불가 여부를 확인하여 시행한다.

제 6 조 (기타) ① 확인기관의 장은 기확인 품목에 대하여 신청업체가 고의로 신청내용을 허위 기재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 확인기관의 장은 신청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사업계획의 변경등으로 국산시설재 구입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는 향후 1년간 동 확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확인기관의 장은 이 고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세부지침을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해외증권발행자금 용도확인 시행지침('93. 9. 1)은 이를 폐지한다.

◎ 통상산업부공고 제 1996-152호

1997년도단체수의계약물품및중소기업간경쟁물품지정공고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물품” 및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중에서의 지명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6년 12월 30일

통상산업부장관

I. 1997년도 단체수의계약물품

1. 총칙

1) 목 적

- 이 총칙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을 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단체수의계약 물품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물품의 분류

- (1) 물품의 명칭 및 분류는 원칙적으로 정부물품분류표의 품명식별기준(7단위, 소분류)과 한국표준산업분류의 품목분류(8단위)에 의하여 분류한다.
- (2) 제1호에 의하여 분류되지 않는 물품은 수요처 규격 또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명칭과 규격에 따라 분류한다.
-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는 경우 여러 품목을 묶어서 분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세부적인 개별 물품명을 별도로 명시하여야 한다.

3) 계약대상 지역

- (1) 계약대상 지역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조의 구역으로서 전국 또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의 업무구역을 말한다.
- (2) 각 물품별 계약대상지역 중 기타지역이라 함은 별개의 계약대상지역이 표기되지 않은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를 말한다.
- (3) 다음의 경우는 해당 연합회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 ㉔ 2개 이상의 업무구역에 소요되는 물품, 지방구매기관의 중앙기관구매의뢰, 중앙기관의 계획구매 등으로 중앙기관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㉕ 구매기관의 업무구역내에 회원조합이 없거나 계약체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4) 전국조합은 구매기관의 소재한 구역내에 조합원의 유무를 불구하고 전국을 계약대상 구역으로 한다.

- (5) 지방조합은 해당 업무구역내에서 소요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지역에 지방조합이 계약체결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연합회도 설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구매기관은 해당물품을 지정받은 지방조합중 1개의 지방조합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4) 구매기관 등의 준수사항

- (1) 공공기관 및 협동조합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중 “중소기업제품구매증대를 위한 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단체수의계약 대상물품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5) 기타의 규정

- 단체수의계약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각종 법규와 이 총칙에서 정한사항 이외의 물량배정, 수혜기준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단체수의계약 운용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2. 단체수의계약지정물품 : (생략)

II. 1997년도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1. 총 칙

1) 목 적

이 총칙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을 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중에서의 지명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물품의 분류

- (1) 물품의 명칭 및 분류는 원칙적으로 정부물품분류표의 품명식별기준(7단위, 소분류)과 한국표준산업분류의 품목분류(8단위)에 의하여 분류한다.
- (2) 제1호에 의하여 분류되지 않는 물품은 수요처 규격 또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명칭과 규격에 따라 분류한다.

3) 지정물품의 선정

지정물품의 선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 (1) 익년도 단체수의계약물품지정 추천시 제외된 물품
- (2) 전년도에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으로 기지정된 물품
- (3)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다량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물품

- (4) 국내 총생산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물품으로서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구매할 경우 대기업의 참여로 중소기업의 안정가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품
- (5) 중소기업형 제품으로 품질이 보장될 수 있는 물품

4) 계약시 주요 고려사항

- (1) 구매기관은 지정된 물품구매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 지명경쟁에 의하여 구매토록 하여야 한다.
- (2) 구매기관은 지역산업육성을 위하여 지방기관에서 소요로 하는 물품, 지방기관이 중앙기관에 구매를 의뢰한 물품, 중앙기관의 계획구매 물품중 지방구매분 등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 소재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쟁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음. 다만, 당해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자가 적어 적정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3) 구매기관은 지정된 물품을 구매할 경우 국내 생산 중소기업체에 한하여 경쟁입찰 참여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국내 생산업체 제품의 품질이 보장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 (생략)

부 칙

1. 이 공고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통상산업부공고 제1995-175호('95. 12. 30)는 이를 폐지한다.

◎ 통상산업부 고시 제 1996-441호

◎ 환경부 고시 제 1996-171호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6년 12월 23일

통상산업부장관
환 경 부 장 관
사업장폐기물감량화지침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지침은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 4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 기물의 감량지침준수의무대상사업자가 폐기물 감량화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는 다음과 같다.

1. “감량화”라 함은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단위 생산량당의 폐기물발생 및 처리량을 줄이거나 유해성 등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 가. 발생원감축 : 공정개선, 생산공정의 효율 적 운영, 환경친화적 대체원료 사용 등의 방법으로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거나 유해성을 완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 나. 재이용 :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당해 생산공정 또는 다른 공정의 원료로 재 투입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재활용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부터 효용가치가 있는 물질 또는 연료화가공

등을 통하여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관계법 령의 규정에 적합한 방법(소각, 매립을 제 외한다)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자”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서 정한 업종 및 규모이상의 사업장 폐기물배출자를 말한다.

제 2 장 사업자의 준수사항

제 3 조 (폐기물감량을 위한 자체계획의 수립)

- ①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폐기물관리법시행규 칙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감량 화를 위한 자체계획(이하 “감량계획”이라 한 다)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여 야 한다. 다만,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철강슬래 그및석탄재배출자의재활용지침(환경부, 통상산 업부 고시 제1993-110호)에 의하여 지정부산 물배출사업자가 수립하는 재활용계획에 따른 연 차별시행계획은 감량계획에 갈음할 수 있다.
- ② 감량계획 수립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폐기물종류별·발생원별 발생현황 분석
2. 당해연도 감량목표
3. 감량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실천계획
4. 기타 감량화 기술개발 등을 위한 예산투자, 관리인력현황등 감량계획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량계획을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로 구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지정폐기물에 한하여 감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중 지정폐기물이 중량기준으로 7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자
2.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제 4 조 (감량계획 및 실적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당해연도 감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 폐기물감량계획 및 추진실적요약서(이하 “요약서”라 한다)를 매년 2월말까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업종별 또는 품목별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요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단체가 설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년 2월말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직접 보고서와 요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량화 추진실적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를 달성정도
2. 전년대비 폐기물발생량 증감분석(생산제품단

위당 폐기물종류별 발생량, 주요발생원별 폐기물종류별 발생량)

3. 감량화의 추진방법 및 그 결과
4. 예산투자 및 관리인력 현황
5. 종합평가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와 요약서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별지 제1호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와 요약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 5 조 (폐기물의 분리수집·보관체계 등의 구축) 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해 성상 및 종류별로 분리하여 처리대상(소각·매립등), 재활용대상으로 구분되는 분리수집·보관·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업자단체의 책무

제 6 조 (사업자단체) 이 지침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단체는 다음과 같다.

1. 섬유제품제조업 : 한국염색공업협동조합연합회(염색), 한국섬유산업연합회(섬유제품제조·기타)
2. 코크스 및 석유정제품제조업 : 한국윤활유공업협회(윤활유), 대한석유협회(원유정제·기타)
3.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도료·잉크), 한국계면활성제·접착제공업협동조합(세정제·계면활성제·접착제), 한국비료공업협회(비료), 한국전자산업진흥회(자기테이프), 한국섬유산업연합회(화학섬유), 한국제약협회(의약품), 한국정밀

- 화학공업진흥회(정밀화학),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합성수지·기타)
4.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 : 대한타이어공업협회(타이어), 대한고무공업협동조합(고무),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프라스틱)
5.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유리), 한국양회공업협회(시멘트·기타)
6. 제1차금속산업 : 한국비철금속협회(비철금속),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주물), 한국강관협회(강관), 한국철강협회(철강·기타)
7. 조립금속제품제조업 : 한국도금공업협동조합(도금), 한국금속양식기공업협회(금속양식기), 한국기계공업진흥회(구조금속제품·기타)
8.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 한국냉동공조공업협회(냉동·공조),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공작기계), 한국전자산업진흥회(가전), 한국기계공업진흥회(일반기계·기타)
9.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제조업 : 한국전지공업협동조합(축전지),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전선),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조명), 한국전기공업진흥회(전동기·기타)
10.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11.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 한국광학기기협회(광학기기), 한국기계공업진흥회(기타)
12.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 한국자동차공업협회(자동차),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자동차 부품)
13. 기타 운송장비제조업 : 한국조선공업협회(조선), 한국자전거공업협회(자전거), 한국기계공업진흥회(철도장비·기타)

- 제 7 조 (감량계획 및 추진실적의 종합·평가보고) ① 사업자단체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보고서와 요약서등을 종합하여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평가보고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매년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량화 추진실적 종합(폐기물 발생현황, 감량화목표설정 및 달성정도 분석등)
 2. 감량화추진의 주요문제점 및 개선대책
 3. 기타 건의사항등

제 4 장 우수사업장의 지정등

- 제 8 조 (우수사업장의 지정요청) ① 사업자단체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근 3년간 사업자가 제출한 보고서와 요약서를 검토하여 별표 3에서 정한 우수사업장지정기준을 만족하는 사업장을 선정하여 이를 우수사업장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② 사업자단체의 장은 사업자단체에 소속된 사업장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별표 3의 제2항을 대신하여, 국내·외 자료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업종 또는 품목의 사업장중 높은 수준의 감량화를 이루고 있다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우수사업장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요청 할 수 있다.
- ③ 사업자단체가 설립되어 있지아니한 업종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당해 사업장을 우수사업장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 할 수 있다.

제 9 조 (우수사업장의 지정등)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사업장의 지정을 요청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련서류 및 현장실사를 통해 요청사항이 사실로 인정될 경우 이를 우수사업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사업장의 지정은 지정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유효하다.

제 10 조 (우수사업장의 지정취소)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우수사업장으로 지정된 사업장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별표 3의 지정기준중 제1호 또는 제3호 내지 제5호에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 사업장의 이전으로 소재지가 변경되거나, 폐업 또는 6개월이상 휴업 할 경우

제 11 조 (우수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사업장으로 지정받은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중 환경친화기업지정운영규정(환경부예규 제136호)에 의한 환경친화기업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자는 동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와 환경개선계획의 이행상황 및 다음 1년간의 세부이행계획등 보고사항중 폐기물관리분야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우수사업장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사업장으로 지정된 사업장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및 통상산업부장관은 우수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정부포상시 우선순위 적용
2. 폐기물감량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설비설치와 관련된 정부의 자금지원에 우선순위 적용
3. 기업 및 생산제품의 환경친화적 이미지제고를 위한 조치

제 12 조 (감량한계의 인정) ① 사업자는 자신이 경영하는 사업장에서 국내·외의 기술적 한계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폐기물발생량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단체의 장에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보고서(이하 “감량한계분석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사업자단체의 장은 사업자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량한계분석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타당성여부를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당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단체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량한계분석보고서의 타당성을 인정받은 사업장을 우수사업장으로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단체의 장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감량한계분석보고서 및 검토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량한계를 인정받은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을 2년간 면제받을 수 있으며, 2년이 경과한 후 계속 감량한계를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량한계분석보고서를 다시 제출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받아야 한다.

제 13 조 (감량한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사업자단체의 장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량한계분석보고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감량한계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으

며, 평가단은 국내·외 현황조사 및 서류심사 또는 현장실사 등을 통해 감량한계분석보고서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다.

-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필요시 평가단의 구성·운영이 정상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점검·조사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 14 조 (감량화를 위한 공동노력등) ① 사업자단체의 장은 폐기물감량화를 위한 기술 및 정보 제공 등을 통하여 해당 업종 또는 품목별 폐기물감량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자단체의 장은 해당 업종 또는 품목별 폐기물감량화 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서 사업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제출된 보고서중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폐기물감량화 기법등을 다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6조에서 규정한 사업자단체중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사업자단체는 동법 제4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 또는 품목의 산업환경실천과제 발굴시 폐기물감량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15 조 (폐기물감량화의 권고등) ① 사업자단체의 장은 사업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와 요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침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 및 통상산업부장관은 사업자단체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사업자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우수사업장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98년에는 1997년의 보고서와 요약서를, 1999년에는 1997년 및 1998년의 보고서와 요약서를 근거로 우수사업장을 지정한다.